

동 국이 규정하는 사본에 대한 수수료.

동 국이 당사자 일방에 규정하는 수수료는 페이지당 육십오(65) 센트 또는 사본당 육십오 달러(\$65.00)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동 국은 단독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수수료의 면제를 규정할 수 있으나, G.S. 1-110에서 요구하는 증빙으로 입증되는 빈곤에 따른 항소 시 동 국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 당사자는 사실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항소 심판관, 심리 책임자, 또는 판정을 위해 배정된 기타 직원이 해당 약정이 결정을 내리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소 심판관, 심리 책임자 또는 판정을 위해 배정된 기타 직원은 해당 약정을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정을 언도할 수 있다. 항소 심판관, 심리 책임자 또는 판정을 위해 배정된 기타 직원이 해당 약정이 결정을 내리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항소 심판관, 심리 책임자 또는 판정을 위해 배정된 기타 직원은 해당 약정을 각하할 수 있다. 약정의 인정 또는 각하 결정은 기록 심리로 이루어져야 한다.

(g) 증인 수임료. - 본 조에 따라 소환된 증인은 동 국이 정한 요율의 수임료를 허용한다. 해당 수임료 및 계정 청구를 포함하는 소송 비용 일체는 본 장을 관리하는 비용의 일부로 간주한다.

(h) 사법 재심. - 본 문서에 규정되는 사법 재심이 부재하거나 재심 신청을 제출하는 이해당사자가 부재할 경우 동 국의 판정은 이의 통지일 또는 우송일 중 빠른 일자에서 30일 이후 최종 판정으로 한다. 판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동 국을 상대로 본 장에 규정되는 구제책을 소진하고 본인이 거주하거나 주사업장이 소재하는 카운티 고등법원에 재심 신청을 제출한 후에만 사법 재심을 허용한다. 재심 신청은 동 국의 판정이나 절차에서 취해야 하는 예외 및 신청인이 구하는 구제책을 명기한다. 법원에 신청을 제출한 후 10일 안에, 신청인은 동 국과 동 국 절차의 기록 당사자 전원에게 신청서 사본을 인편이나 영수확인부 증명우편으로 송달한다. 동 국은 신청인의 요청 시 제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한다. 동 국은 자체 판정이 관련된 사법 소송의 당사자로 간주되며 이를 위해 지명된 담당 변호사에게 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신청서 송달 또는 제출에 관한 본 항의 요건에 대한 질의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동 국 절차의 당사자는 신청서 사본을 수령한 후 10일 안에 법원에 고지하여 재심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피해자는 G.S. 1A-1, Rule 24의 규정대로 개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재심 신청서 사본을 접수한 후 45일 이내, 또는 법원이 허용하는 추가 시간 안에, 동 국은 재심 대상 절차의 전체 기록의 원본 또는 등본을 재심 법원에 전달한다. 해당 기록은 법원의 허가 하에 재심 절차 당사자 전원의 약정으로 생략할 수 있다. 법원은 기록 제한의 약정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당사자에게 해당 거부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기록의 후속 정정이나 추가를 요구 또는 허용할 수 있다.

(i) **재심 절차.** - 재심 신청이 G.S. 96-15(h)의 규정대로 적시에 제출 및 송달되는 경우, 법원은 정당하고 공정한 사건 판단에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상대방을 피고로 삼을 수 있다. 동 국은 자체 재량에 따라 동 국의 판정과 관련된 법률 쟁점을 재심 법원에 증명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른 사법 절차에서 동 국의 사실확정은 이를 입증할 적법한 증거가 있고 사기가 부재할 경우 결정적 증거로 하며, 법원의 관할권은 법률 쟁점으로 국한된다. 그와 같이 증명되는 해당 조치 및 쟁점은 약식으로 심리하고 민사 소송 일체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다. 항소는 민사소송에 규정하는 대로 고등법원 판사가 제기할 수 있다. 동 국은 고등법원의 판정이나 판결에 대해 항소과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피해 당사자로 간주한다. 동 국의 항소에 대해서는 보석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소송 또는 소송절차의 최종 판결에 따라 동 국은 해당 판결에 부합하는 명령을 언도한다. 원심법원의 판결, 명령 또는 판정에 대해 항소가 제기될 경우에는 동 국의 최종 판정이 급여를 허용하지 않는 한 소인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j) 1985년 개정법, c. 197, s. 9에 의해 폐지됨.

(k) 본 장의 기타 규정에 관계 없이 동 국은 개정 사회보장법 제303조(a)(1)(42 U.S.C.A., 503(a)(I)절)에서 요구하는 경우 개인에게 즉시 급여 지급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최소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연혁.

Ex.Sess.1936,c.1,s.6; 1937,c.150;c.448,s.4; 1941,c.108,s.5; 1943,c.377,ss.9,10; 1945,c.522,ss.30-32; 1947,c.326,s.23; 1951,c.332,s.15; 1953,c.401,s.19; 1959,c.362,ss.16,17; 1961,c.454,s.21; 1965,c.795,ss.20-22; 1969,c.575,

ss.13,14; 1971,c.673,ss.30,30.1; 1977,c.727,s.54; 1981,c.160,ss.27-32; 1983,c.625,ss.10-14; 1985,c.197,s.9;c.552,ss.18-20; 1987 Reg.Sess., 1988)c.999,s.6; 1989,c.583,ss.11,12;c.707,s.4; 1991,c.723,ss.1,2; 1993,c.343,ss.4,5; 1999-340,ss.6,7; 2004-124,s.13.7B c);